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내 외환시장은 외환위기 재발 방지 등 대외건전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 중심의 폐쇄·제한적인 시장구조를 20년 이상 유지해왔음. 그 결과 우리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도 외환시장의 성장은 정체되어 왔음. 오히려 폐쇄적인 외환시장 구조로 인해 외환시장에서 특정 시장참가자의 영향력에 따라 가격이 좌우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새로운 원화 관련 수익모델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국내 외환·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선진국 수준의 우리 경제 규모에 걸맞은 금융부문의 발전을 위해 국내 외환시장을 개방적·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또한, 정부가 대외건전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기 및 수단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안정조치도 함께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 전시 등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도 시장상황에 맞게 정부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고→시정명령→조치”의 단계적 조치 도입
- 2) 전자장비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실시간으로 각 금융기관들의 환율 정보 공시, 주문 접수·거래 매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전자중개업자 인가 관련 근거조항 마련
- 3)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참여에 대응하여 시장교란행위 금지에 대한 대응수단 정비를 위해 제재수단 마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일부 규제 강화 포함

법률 제 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 명령 또는 조치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및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 제2호의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지급수단, 귀금속, 증권 또는 파생상품”으로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본 이동으로 통화정책, 환율정책, 그 밖의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 명령 또는 조치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및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2. 자본거래를 하는 자에게 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대고객외국환전자증개업무) ① 전자거래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제9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대고객외국환전자증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고객외국환전자증개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자(이하 “대고객외국환전자증개회사”라 한다)가 대고객외국환전자증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일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 하고 다른 일방은 금융회사등 및 관련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한다. 이 경우, 대고객외국환전자증개회사의 거래 상대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고객외국환전자증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합병 또는 해산
- 2.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양도·양수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대고객외국환전자증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대고객외국환전자증개회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대고객외국환전자증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9조, 제44조, 제54조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대고객외국환전자증개회사”로, “금융투자업”은 “대고객외국환전자증개업무”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고객외국환전자증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업무상의 의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외국환증개회사 및 대고객외국환전자증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는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시장교란행위 금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 2. 제1호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12조 제1항 본문의 “제8조 및 제9조”를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 2”로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제5호의 “제8조제4항”을 “제8조제4항 및 제5항”으로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제6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제한 및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1.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및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의3에 따른 시장교란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3조 제10항의 “「국채법」 제4조”를 “「국채법」 제6조”로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제6호의 “제10조제2항”을 “제10조의3”으로 개정한다.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또는 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27조의2 제1항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의2.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제27조의2 제1항 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의2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대고객외국환전자증개업무를 한 자(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대고객외국환전자증개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대고객외국환전자증개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제32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제32조 제1항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제32조 제1항 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대고객외국환전자증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제32조 제4항 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한국은행·정부기관·외국환평형기금·금융회사등에 보관·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제6조(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① ----- ----- ----- -----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 명령 또는 조치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및 이행 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지급수단, 귀금속,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에게 그 거래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본 이동으로 통화정책, 환율정책, 그 밖의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심각한 지장을 주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자본이동으로 통화정책, 환율정책, 그 밖의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의2(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전문업무 등) ① <신 설>

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 명령 또는 조치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및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2. 자본거래를 하는 자에게 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의 부과

제9조의2(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 ① 전자거래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② <신 설>

③ <신 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의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범위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자(이하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회사”라 한다)가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를 할 수 있는 거래의 일방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등 및 관련 기관으로 하고 다른 일방은 금융회사등 및 관련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회사의 거래 상대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합병 또는 해산
2.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양도·양수

④ <신 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회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신 설>

⑤ 이 법에 따른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9조, 제44조, 제54조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회사”로, “금융투자업”은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로 본다.

⑥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업무상의 의무)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는 그 고객과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를 할 때에는 고객의 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이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업무상의 의무) ① -----
-----, 외국환중개회사 및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회사 -----

② <삭 제 >

제10조의3(시장교란행위 금지) <신 설>

제10조의3(시장교란행위 금지) 외
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
을 얻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5. 제8조제4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

제12조(인가의 취소 등) ① -----

-----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

5. 제8조제4항 및 제5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6의2. < 신 설 >

② <신 설>

6의2.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증금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제한 및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1.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및 이

	<p><u>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u></p> <p>2. <u>제10조의3에 따른 시장교란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u></p>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⑩ 제2항 제2호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채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외국환평형기금) ⑩ ----- 「국채법」 제6조를 -----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價額)의 3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	제27조(벌칙) ① -----
6.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	6. <u>제10조의3을</u> -----
제27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	제27조의2(벌칙) ① -----

<p>을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로 한다.</p> <p>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p> <p>1의2. <신 설></p> <p>2의2. <신 설></p>	<p>-----</p> <p>----</p> <p>1. <u>제6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또는 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p> <p>1의2. <u>제8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u></p> <p>2의2. <u>제9조의2제1항 전단 또는</u></p>
---	--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고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를 한 자(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1의2. <신 설>

제32조(과태료) ① -----

1. 제6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의2. 제8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2의2.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신 설>

2의2. 제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대고객외국환전자중개업무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④ -----

2의2.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753